Sh내가만든통장 상품설명서

-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88-1515/1644-1515)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uhyup-bank.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의사항 하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Sh내가만든통장

■ 상품특징: 고객이 직접 지정 및 변경할 수 있는 고객지정금액에 따른 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전자금융 수수료면제서비스를 제공

2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증서,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 | 구 분 | | | 내 용 | | | | |
|-------------|-------|---------------|-----|---|--------------|--------|------|--|
| 가 | 입 | 대 | 상 | 실명의 개인 (1인1계좌) | | | | |
| 가 | 입 | 금 | 액 | 제한없음 | | | | |
| 상 | 품 | 유 | 형 |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계정과목 : 저축예금) | | | | |
| 거 | 래 | 방 | 법 | 신규: 영업점, 비대면(스마트폰뱅킹) 해지: 영업점, 비대면(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 기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부터의 전환 가입 불가 ※ 이 상품은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없음 | | | | |
| 계 약 해 지 방 법 | | | - 법 |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단, 영업점 신규계좌의 비대면 채널 해지는 성년인 개인만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수협은행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계좌가 필요합니다. | | | | |
| | | | | • 이 예금의 금리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도 변경한 날부터 변경된 금리 적용합니다. • 이자지급시기가 원가일인 경우 일별 잔액구간 별 적용금리 (단위:세금공제 전 기준, 연, %) | | | | |
| 기 | 본 | 금)24.05.(| | 일별 잔액 구간 | | | 적용금리 | |
| | 돈일:20 | | | 지정금액 이상시 | 지정금액 (최대 10억 | 원 이하) | 1.00 | |
| | | | | | 지정금액초과 ~ 지정- | 금액의 2배 | 0.70 | |
| | | | | 101 | 지정금액의 2배 초 | 과금액 | 0.40 | |
| | | | | 지정금액 미만시 0.10 | | | | |
| | | | | | | | | |

| | • 이자지급시기가 혀 | H지일인 경우 적용금리 | | | |
|------------------------|--|--|----------------------|--|--|
| | | | (단위:세금공제 전 기준, 연, %) | | |
| | | 일별 잔액 | 적용금리 | | |
| | 지정금액과 | 0.10 | | | |
| | • 최소 고객지정금액 | | | | |
| | 가입시기 | 출시일('18.1.2일) ~ '19.4.28일 | '19.4.29일 이후 | | |
| | 최소지정금액 | 1백만원 | 1천만원 | | |
| 고객지정금액 지정 및 변경 | · 4 4 4 7 0 0 1 0 0 0 0 0 0 0 | | | | |
| | • 이자지급시기가 원가일인 경우 이자계산 - 예금주가 지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일 최종잔액에 대하여 구간별 차등 금리를 적용하여 해지일 전일 또는 이자계산기준일(매월 제3토요일 단, 법정공휴일인 ^{주1)} 경우직전 영업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해지일 또는 원가일에 세후 이자 지급합니다 이자지급일 이후에는 이자지급일 전일자로 기산일 거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 | | |
| 이자 계산방법 (산출근거) | 이자지급시기가 해지일인 경우 이자계산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일별잔액 및 고객 지정금액과 관계없이 최근 이자 원가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연 0.1%(세전) 적용합니다. 이자계산기간 1. 해지일의 이자계산기간 : 입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2. 원가일의 이자계산기간 가. 첫 가입 고객 : 최초 예금일부터 이자계산 기준일까지 나. 기 존 고 객 : 원가일부터 다음 이자계산기준일까지 | | | | |
| 이 자지 급시 기 | • 원가일 ^{주2)} : 매월 제3토요일 (법정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의 다음날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해지일 | | | | |
| 연계·제휴서비스 (수수료면제서비스) | | | | | |
| 양도 및 담보제공 | 및 담보제공 • 양도 : 불가 (단,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 • 담보제공 : 불가 | | 가능) | | |
| 자 동 이 체 등 록 | 가능 | | | | |
| 예 금 자 보 호 여 부 | 보호금융상품 하여 |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⁹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 보호됩니다. | | | |
| 세 제 혜 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 L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 ⁶ | 합한도 범위 내) | | |

| | ※ 관련세법이 변경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원 금 및 이 자 지 급 제 한 | 계좌에 압류^{주3)}, 기압류^{주4),}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 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 거 래 중 지 |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 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편입시기 : 연 2회(매년 6월, 12월 제3 토요일 기준으로 익일인 일요일에 편입)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행 영업점에서 본인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거래 가능 |
| 휴 면 예 금 및 출 연 |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주5)}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 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판매사가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 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금융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계약체결일 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 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 자 료 열 람 요 구 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비대면 신규 후 통장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통장증서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이 상품은 Sh수협은행 디지털개인금융부(1588-1515)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상품입니다.
-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 용어 | 설명 | | |
|-----------|---|--|--|
| 주1) 법정공휴일 | ■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날 | | |
| 주2) 원가일 | ■ 이자를 지급하여 통장에 입금하는 날, 이자계산기준일의 다음날 | | |
| 주3) 압류 |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 |
| 주4) 가압류 |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 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쌍방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일 | | |
| 주5) 출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 | |